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가합539808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 소]

전 문

원고1. A 주식회사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완식

피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김철수

변론 종결2019. 1. 11.

판결 선고2019. 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794,782,568원, 원고 B에게 2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의 영국 현지법인인 자회사이다.

2) 피고는 주식회사 D(2011. 1. 3. 상호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 이하 'D'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투자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2010. 5. 31. D와, 원고 A이 D 발행의 보통주 16만 주를 주당 5,000원 합계 8억 원에, 원고 B가 D 발행의 보통주 4만 주(이하 위 16만 주와 함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은 발행되지 아니하였다)를 주당 5,000원 합계 2억 원에 각 인수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다.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 F는 이해관계인으로 각 이 사건 투자계약에 참여하였다.

2)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조(연대보증)

피고는 본 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본 계약상 피고의 의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D 및 F의 제반 의무이행을 연대보증한다.

제10조(사전 통지, 협의 및 합의사항)

D는 경영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고 A과 사전 서면 합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즉시 서면으로 원고 A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증자 또는 감자

2) 회사정리, 청산, 해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결정

(생략)

제15조(주식의 처분 및 주식매수청구권)

(4) 본 조에 의한 주식매매가격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양 당사자 간에 가격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조의 주식매매가격은 이 주식매수를 청구한 경우 원고들이 인수한 주식인수대금 총 1,000,000,000원으로 한다.

제16조(해제 또는 해지 및 주식의 매수)

(1) D, F 또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들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D, F 및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원고들은 원고들이 보유하는 D의 주식을 본 조에 정한 바에 따라 F 또는 피고에게 매수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F 및 피고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1. D 또는 F가 부도, 회사정리, 회생, 파산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4. D, F 또는 피고가 본 계약상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2) 위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의 경우 F 또는 피고가 원고들의 주식매수청구 통지서 기타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받은 날에 당사자들 간에 주식매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F 및 피고가 동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 제3항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본 조에 따른 주식매수가격은 제15조 제4항에 따라 결정한다.

다. D의 계약위반 및 원고들의 시정통지

1) D는 이 사건 투자계약 제10조에 따른 사전 서면협의 없이, 2013. 3. 27.경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3. 4. 1.경 증자를 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계약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D에 대하여, 2013. 3. 29. 사전 서면협의 없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시정을, 2013. 4. 2. 사전 서면협의 없는 납입자본금 증가의 시정을 각 통지하였다.

라. 원고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1) 원고들은 30일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2013. 5. 2. D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 제16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이 사건 투자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2) 아울러 원고 A은 2013. 5. 20., 원고 B는 같은 달 31. 각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 제16조 제1항 제2문, 제2항, 제3항, 제15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한편, 주식매매가격의 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원고 A의 위 통지서는 2013. 5. 21., 원고 B의 위 통지서는 2013. 6. 3. 피고에게 각 도달하였다.

마.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등

- 1)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6회단501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6. 10. 7.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간주관리인이 되었다.
- 2)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016. 12. 28.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제2차 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제3차 관계인집회)가 개최되었고, 2016. 12. 29.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위 회생계획에서 원고 A의 회생채권으로 원금 1,183,964,238원, 개시전이자 15,000,000원 합계 1,198,964,238원이 시인되고, 그 중 6,246,604원을 10년간 분할변제 완료하면 나머지 1,192,717,634원은 면제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 3) 피고는 회생법원으로부터 조기변제 허가를 받아 2017.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1586호로 원고 A을 피공탁자로 하여 조기변제금 5,212,791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원고 A은 2018. 3. 9. 공익채권으로서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일부를 수령하는 것일 뿐 회생채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의를 유보한 채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내지 9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채권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매매대금 8억 원 및 2억 원으로 한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원고들의 각 주식이전의무와 피고의 매매대금지급의무가 모두 미이행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간주관리인으로서 회생계획이 인가된 시점까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아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 A은 주식매매대금 8억 원에서 공탁금으로 회수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794,782,568원(= 800,000,000원 - 5,217,432원), 원고 B는 주식매매대금 2억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 이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의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원고들의 의무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통지하여 피고는 관리인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의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해제권 행사 기회를 박탈당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이 주식이전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하면,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이 경우 관리인이 더 이상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게 된 이상 이행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공익채권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2012. 10. 11.자 2010마122 결정 등 참조).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주식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된다. 즉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가 주식양도의 방법이므로 주권의 교부의무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등 참조) 주식양도의 의사표시가 매매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주권의 교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가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에 주식양도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봄이 합리적인 의사해석이다.

2)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3. 8. 20., 원고 B가 2013. 9. 5. 피고에게,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한 상태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8억 원 및 2억 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4. 11. 20. 원고들에게 현재 D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로 지급능력이 없고 회생절차종결 후 추가적 자금조달 방안을 강구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답변한 사실, 다시 원고 A이 피고에게, 2015. 3. 11. 및 2016. 5. 16. 동일한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당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식이전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①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체결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채권적 매매계약으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는 준물권행위로서의 주식양도 의사표시와 구별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에 주식을 이전하겠다는 것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의 통상적인 의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매매대금 수령과 상환으로 주식을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하면서 이 사건 주식이전의무를 선이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위와 같은 통지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물권적으로 양도하는 의사까지 표시하였다고 선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②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이 행할 이행은 주식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겠다는 준물권적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매매대금과 상환으로 주식을 이전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이상 주식이전에 관한 이행의 제공도 함께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별도로 특별한 이행 제공행위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위 각 통지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한 상태라고 한 것은 주권미발행 주식의 이전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다한 상태임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원고들의 채무는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인 2016. 12. 29. 이후에는 피고가 간주관리인으로서 더 이상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되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채권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피고가 원고들의 위와 같은 통지를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준물권행위로서의 주식양도 의사표시로 오해하여 간주관리인으로서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금반언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 제15조 제4항에 따라 원고 A에 주식매매대금에서 원고 A이 자인하는 회수금을 공제한 나머지 794,782,568원(= 800,000,000원 - 5,217,432원), 원고 B에 주식매매대금 2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행제공으로 피고가 지체에 빠진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8.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진상범

판사이재경

판사서청운